

사례관리 연계 처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
「아동복지법」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29조의2의 사례관리 연계 처분을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6년 7월 31일

시 흥 시 장

1. 공고내용 : 사례관리 연계 처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2. 근거법규 : 「아동복지법」 제29조의2,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
3. 공고기간 : 2026. 7. 31. ~ 2026. 8. 14.(14일간)
4. 공고대상

대상자	주 소	처분내용	반송사유	비 고
고*열	경기도 시흥시 배곧*로 **_**, ***동 ***호	사례관리 연계	기타	
김*애	경기도 시흥시 배곧*로 **_**, ***동 ***호	사례관리 연계	기타	

5. 공고내용

- 가. 「행정절차법」 제26조(고지)에 따라 처분 내용을 통지하오니 사례관리 연계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.
- 나.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「행정절차법」 제15조(송달의 효력 발생)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.

6. 문 의 처: 시흥시청 아동돌봄과 아동보호팀 업무담당자(☎ 031-310-0785)